

#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20호][개정 2024.07.0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자격연수대상자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의 가산점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과 중등학교(보건교사 포함) 및 특수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달한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제3조(가산점)** ①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②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에 따라 합산한 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한다.

**제5조(실적가산점)**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1학점(15시간)을 0.02점으로 평정하고, 연 0.08점을 초과

할 수 없다. 해당 직무연수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중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직무연수를 말한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에 따라 교육성적으로 평정한 직무연수 실적은 가산점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은 연 0.1점으로 평정하고, 다음 각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2.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3.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 제3장 선택가산점

**제6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①연구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2. 교육실습협력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3. 교육실습대용학교(부설학교 포함)에서 2004.2.29.까지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4. 꿈나르미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②국내 교육기관 등에 교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교재연구, 강의, 특강, 연수 등)를 직접 수행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2.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개정 2020.7.13.〉
3. 낙동강학생교육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4.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에 2014.1.1. 이후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개정 2020.7.13.〉
5.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교육기관(연수, 연구, 수련, 행정 등)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2016.2.28. 이전은 월 0.0105점(일 0.00035점)

2016.3.1. 이후는 월 0.015점(일 0.0005점)

6. 우포생태교육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으로 한다.
7.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에 2019.3.1. 이후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신설 2020.7.13.>
8. 특수교육원에 2023.3.1. 이후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으로 한다. <신설 2022.7.11.>

③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1997.2.28. 이전
  -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125점(일 0.00417점)
  -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96점(일 0.00320점)
  -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66점(일 0.00220점)
  -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37점(일 0.00123점)
2. 1997.3.1.부터 1997.12.31.까지
  -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84점(일 0.00280점)
  -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68점(일 0.00227점)
  -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50점(일 0.00167점)
  -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34점(일 0.00113점)
3. 1998.1.1. 이후
  -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42점(일 0.00140점)
  -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34점(일 0.00113점)
  -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25점(일 0.00083점)
  -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7점(일 0.00057점)
4. 2006.3.1. 이후 타시·도 전입자는 제3호를 준용한다.

④준벽지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084점(일 0.00028점)으로 평정하고, 준벽지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2014.1.1. 이후 지세포중학교, 원동중학교, 미조중학교, 화개중학교, 거창중학교신원분교장, 야로중학교, 야로고등학교
2. 2016.1.1. 이후 미리벌중학교
3. 2021.3.1. 이후 거창덕유중학교 <신설 2020.7.13.>

⑤농어촌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1995.3.1.~1998.2.28.(가산점인정자명부등재자)와 1998.3.1.~2008.12.31. 농어촌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
2. 2009.1.1.~2013.12.31.

-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점(일 0.0004점)
3. 2014.1.1. 이후  
 가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  
 다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점(일 0.0004점)
4. 2016.1.1. 이후  
 라지역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09점(일 0.0003점)
5. 농어촌의 급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학교 등의 급지는 교육감이 지정한다.  
 가지역: 시·군의 면지역 학교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나지역: 시의 면지역 학교, 군의 읍·면지역 학교, 시군 접경지역 학교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다지역: 시의 읍지역 학교, 시의 면지역 학교 중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학교, 이미 지정된 동지역 학교(단, 장유지역, 문산중, 진양고 제외)  
 라지역: 교육환경이 열악한 동지역 학교
6. 창원과학고등학교에 2011.3.1. 이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평정한다.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 2011.9.1. 이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평정한다.
- ⑥의1. 교육활동 우수교사 경력은 2016.3.1. 이후 월 0.005점(일 0.00016점)으로 평정 하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2017.3.1부터 폐지)
1.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교사 정원의 15%(소수절상)를 추천한다.(단, 교사정원이 11~15명인 학교는 3명 추천)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10%(소수절상)를 선정한다.
  3. 교육감이 승인한다.
- ⑥의2. 도심지역 학교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도심지역이란 ③도서벽지, ④준벽지, ⑤농어촌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가산점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2. 2017.3.1부터 월 0.004점(일 0.0001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8점으로 한다.
  3. 특례1. 2017.2.28. 기준으로 농어촌학교 등 경력가산점이 1.25점에 도달한 교사가 농어촌 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도 2017.3.1.부터 2020.2.29.까지 3년간만

도심지역 경력가산점을 평정한다.

4. 특례2. 농어촌학교 등 경력가산점이 1.25점에 도달한 전문교과 교사가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2호와 같이 평정한다.

⑦특수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월 0.009점(일 0.0003점)으로 평정한다. 단, 19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담당한 경력과 1994.9.22. 이전에 특수학급을 맡아 1995.02.28.까지  
담당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또, 2017.1.1. 이후에 특수  
학교에 근무한 경력 및 특수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특수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하고, 중등학교 교사 및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보직교사 근무 경력은 월 0.021점(일 0.0007점)으로 평정한다.

⑨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 경력은 월 0.015점(일 0.0005점)으로 평정한다.

⑩담임교사 등의 경력은 월 0.00595점(일 0.000198점)으로 평정하고, 해당경력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2.9.1. 이후 담임교사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2. 2016.3.1. 이후 부장교사 경력 중 제8항 경력으로 평정하지 아니한 경력,  
단, 2012.9.1.이후 담임교사, 2016.3.1.이후 부장 또는 기숙사 사감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3. 2016.3.1. 이후 기숙사 사감 경력, 단 2012.9.1.이후 담임교사, 2016.3.1.  
이후 부장 또는 기숙사 사감 경력 중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력
4. 기숙사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기  
숙사로 한다.

2018.3.1.이후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의 기숙사로 한다. <신설 2018.3.1.실적부터>

2023.3.1.이후 경상남도교육청 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국·공립 학교의 기숙사로  
한다. <신설 2023.3.1.실적부터>

5. 사감 경력 인정 인원은 3월에 보고된 수용 학생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  
한다.

학생수 50명 미만 기숙사는 3명

학생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기숙사는 4명

학생수 100명 이상 150명 미만 기숙사는 5명

학생수 150명 이상 200명 미만 기숙사는 6명

학생수 200명 이상 기숙사는 7명

6. 사감 경력 인정 대상자는 학교장이 선정하고, 교육감이 승인한다.
7. 2022.3.1.이후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칠북분원에 파견된 교사로서 위스쿨 학급당 1명의 담임 경력 <신설 2021.7.12.>
- ⑪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6조 ②항과 합산하여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7.3.1.이후 실적)
  1. 월평정점 0.0084점 일평정점은 0.0003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0.4점으로 한다.
  2. 전입 후 3년 이내의 연속 근무 경력 중 최초 1년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제7조(실적가산점)** 실적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 ①교육연구대회 입상 실적은 도 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 실적에 대하여 등급의 구별 없이 연 0.05점으로 평정하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 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제외한다.
- ②영재교육 실적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연 0.1점으로 평정한다. 단,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하여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84점(일 0.0003점)으로 평정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2.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명되어
  3. 영재학급 담임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4. 영재학급 수업을 연 34시간 이상 담당한 교사
- ③발명교육 실적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연 0.05점 또는 연 0.1점으로 평정한다. 단,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하여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84점(일 0.0003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1.3.1.이후 실적>
  1. 지도교사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 나.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에서
    - 다. 수업을 연 34시간 이상 담당하고
    - 라. 실적물 전시회(지도교사 성명이 포함된 공문이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된 것)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마. 다음 제2호의 가, 나, 다 요건의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의 가산점은 연 0.1점으로 평정하고, 가, 나, 라 요건의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는 0.05점으로 평정한다.<개정 2021.3.1.이후 실적>

2. 학생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의 학생이거나

나. 영재교육원 발명영재학급 지도교사가 소속된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2021.2.28.이전 실적)

라.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동일연도에 동일학생 동일 작품으로 출원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학생에 한한다.(2021.2.28.이전 실적)

마.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우수상 이상(특별상 포함)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1.3.1. ~ 2022.2.28. 실적)

바.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또는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1.3.1. ~ 2022.2.28. 실적)

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우수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은상 이상(특별상 포함)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2.3.1. 이후 실적)

아.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또는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을 수상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22.3.1. 이후 실적)

3. 특허권 등은 출원연도별로 1건만 인정한다. (2021.3.1. 폐지)

4. 특허권 등은 등록연도의 실적으로 보고 평정한다. (2021.3.1. 폐지)

5.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 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제외한다.

④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생 지도 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1. 금메달은 연 0.1점

2. 은메달은 연 0.05점

3. 동메달은 연 0.025점

4. 단, 동일연도에 2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경우 상위 하나만으로 평정한다

5.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에 따라 연구대회 입상 실적으로 평정한 실적은 제외한다.

⑤학력향상 유공 실적은 연 0.05점으로 평정한다. 단,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417점으로 평정한다. (2015.3.1. 폐지)

⑥청소년단체 지도 실적은 연 0.04점으로 평정한다. 단, 1년 미만 실적이 인정된 사람은 월 0.0034점으로 평정한다. (2015.1.1. 폐지)

⑦경로효행 실적은 연 0.1점으로 평정한다. (2012.3.1. 폐지)

⑧기술자격 취득 실적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하되, 1회로 한정하고,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자격증 하나만으로 평정한다.

1. 다음 실적은 0.3점으로 평정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1·2급, 산업기사, 기능사1급, 서비스1급·1단)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증(1~3급)을 소지하고, 실업계고교에서, 관련 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실적에 한한다. 단, 공업계 이외의 실업계는 1994.9.22. 이후 수업 담당자에 한함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분야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개정 2024.7.8.>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은 2025.3.1. 이후 취득부터 적용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무분야자격증(워드프로세서 1급, 2012.1.1. 이후에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개정 2017.7.10.>

2. 다음 실적은 0.1점으로 평정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기능사2급 및 등급이 없는 경우, 서비스2·3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증(4~6급)을 소지하고, 실업계고교에서, 관련 있는 과목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실적에 한한다. 단, 공업계 이외의 실업계는 1994.9.22. 이후 수업 담당자에 한함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분야 자격증(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개정 2024.7.8.>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은 2025.3.1.이후 취득부터 적용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무분야 자격증(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개정 2017.7.10.>

**제8조(기타)** 그 밖에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산 항목 및 점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여 시행한다.

## 제4장 계산 등

**제9조(합산 상한점)** 경력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은 [별표1]과 같고, 실적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은 [별표2]와 같다.

### 제10조(중복평정의 금지)

①공통가산점 경력과 선택가산점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공통가산점 경력이 우선한다.

②동일기간에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마다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한다.

1. 연구학교 경력, 교육실습협력학교 경력, 꿈나르미학교 경력
2. 파견 근무 경력, 도서·벽지 근무 경력, 준벽지 근무 경력, 농어촌 등 근무 경력
3. 도서·벽지 근무 경력, 특수교육 경력
4. 도서·벽지 근무 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
5. 준벽지 근무 경력, 특수교육 경력
6.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근무 경력
7. 농어촌학교 등 근무 경력, 특수교육 경력
8. 보직교사 경력, 담임교사, 기숙사 사감경력

③동일학년도에 실적과 실적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마다 유리한 실적 하나만 평정한다.

1. 여러 연구대회 입상 실적
2. 영재교육 실적, 발명교육 실적
3. 전국기능경기대회 여러 입상 실적

**제11조(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수를 단위로 계산하고, 경력가산점은 경력별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제12조(평정 시기)**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부칙(2015.5.15. 인사위-171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별표1〕 경력가산점일람표에서 합산상한점 1.8은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17.2.28. 평정할 때에는 2.0점
2. 2018.2.28. 평정할 때에는 1.9점
3. 2020.2.28. 평정할 때에는 1.8점

부칙(2016.5.25. 인사위-18630)

**제1조(경과조치)** 제6조(경력가산점)⑤항5호의 다음 해당사항은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1. 김해지역(장유, 진영지역 제외)에 근무한 경력 월 0.009점(일0.0003점)부여(2017.3.1.부터)
2. 장유지역 농어촌 급지 해제(2020.3.1.)
3. 진주혁신도시 이설학교(문산중, 진양고) 농어촌 급지 해제(2017.3.1)

부칙(2016.8.26. 인사위-3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인사위-201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7. 인사위-2018-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3. 인사위-202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7.12. 인사위-20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학년도 시행안 예고)** 이 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시행일: 2022.4.1.>

- 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 ②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은 0.015점(일 0.0005점)으로 한다.

### 제3장 선택가산점

**제6조(경력가산점)** 경력가산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평정한다.

- ① 연구학교 등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시행일: 2022.4.1.>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2. 교육실습협력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3. 교육실습대용학교(부설학교 포함)에서 2004.2.29.까지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일 0.0006점)으로 한다.
  4. 꿈나르미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129점(일 0.00043점)으로 한다.

경력가산점 일람표<시행일: 2022.4.1.>

조.항.경력	구분	월평정점	소요기간	상한점			
4.①.연구학교(공통)	교육부장관지정	0.018	55.6월(5년)	1.00	1.00	1.00	
	연구학교	0.0129	77.6월(7년)	1.00			
	꿈나르미학교	0.0129	77.6월(7년)	1.00			
	6.①.연구학교(교육감) 등	교육실습협력학교	0.0129	45.0월(4년)	0.58		0.58
		교육실습대용학교	0.018	32.3월(3년)	0.58		
4.②.파견근무(공통)	재외국민교육기관	0.015	33.4월(3년)	0.50	0.50	1.80	
	6.②.파견근무(국내)	한국교육방송공사	0.017	23.5월(2년)			0.40
		남해학생야영수련원	0.017	23.5월(2년)			0.40
		낙동강학생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진산학생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우포생태교육원	0.015	20.0월(2년)			0.30
		교육기관파견	0.015	20.0월(2년)			0.30
		0.0105	28.6월(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0.0084	60월(5년)	0.40			

부칙(2022.7.11. 인사위-202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력가산점 일람표

조.항.경력	구분	월평정점	소요기간	상한점		
4.①.연구학교(공통)	교육부장관지정	0.018	55.6월(5년)	1.00	1.00	1.00
6.①.연구학교(교육감) 등	연구학교	0.0129	77.6월(7년)	1.00		
	꿈나르미학교	0.0129	77.6월(7년)	1.00		
	교육실습협력학교	0.0129	45.0월(4년)	0.58		
	교육실습대용학교	0.018	32.3월(3년)	0.58		
4.②.파견근무(공통)	재외국민교육기관	0.015	33.4월(3년)	0.50	0.50	1.80
6.②.파견근무(국내)	한국교육방송공사	0.017	23.5월(2년)	0.40		
	남해분원	0.017	23.5월(2년)	0.40		
	낙동강학생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진산분원	0.017	23.5월(2년)	0.40		
	칠북분원	0.017	23.5월(2년)	0.40		
	특수교육원	0.017	23.5월(2년)	0.40		
	우포생태교육원	0.015	20.0월(2년)	0.30		
	교육기관파견	0.015	20.0월(2년)	0.30		
		0.0105	28.6월(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0.0084	60월(5년)	0.40			
6.③.도서벽지	다지역(덕유교육원)	0.025	36월(3년)	0.90	0.90	
	라지역	0.017	36월(3년)	0.60		
6.④.준벽지	(14.1.준벽지)	0.0084	35.7월(3년)	0.30	0.30	
6.⑤.농어촌학교 등	(95.3.가지역)	0.018	69.5월(6년)	1.25	1.25	
	(09.1.나지역)	0.015	83.4월(7년)	1.25		
	(14.1.다지역)	0.012	104.2월(9년)	1.25		
	(16.1.라지역)	0.009	138.9월(12년)	1.25		
	(11.3.창원과학고)	0.015	83.4월(7년)	1.25		
	(11.9.마이스터고)	0.015	83.4월(7년)	1.25		
6.⑥.교육활동우수교사	16.3.부터	0.005	15회(15년)	0.06	0.06	
6.⑥의2.도심지역 학교 등	17.3.부터	0.004	120월(10년)	0.48	0.48	
6.⑦.특수교육	(69.3.특수학교)	0.018	55.6월(5년)	1.00	1.00	1.00
	(73.3.특수학급)	0.009	111.2월(10년)	1.00		
6.⑧.보직교사	71.1.부터	0.021	59.6월(5년)	1.25	1.25	1.75
6.⑨.장학사·연구사		0.015	50월(5년)	0.75		
6.⑩.담임교사 등	12.9.부터	0.00595	85월(3+7년)	0.50	0.50	

※ 특수교육원(월 0.017점): 2023.3.1.이후 경력부터 적용

[별표2] 실적가산점 일람표

조.항.실적	인정기간	연평정점	소요기간	상한점		
5.①.직무연수(공통)	해당직위	0.08	(13년)	1.00	1.00	1.00
5.②.학교폭력(공통)	13.1.부터	0.10	10회	1.00	1.00	1.00
7.①.교육연구대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의거)	16.1.부터	0.05	4회(4년)	0.20	0.50	0.80
7.②.영재교육	06.3.부터	0.10	(2년)	0.20		
7.③.발명교육	06.3.부터	0.10	(2년)	0.20		
	21.3.부터	0.10	(2년)			
		0.05	(4년)			
7.④.전국기능경기대회		0.10	금 2회(2년)	0.20		
7.⑤.학력향상	10.3.~15.2.	0.05	5회(5년)	0.25		
7.⑥.청소년단체	10.3.~14.12.	0.04	1년 10월	0.074		
7.⑦.경로효행	10.3.~12.2.	0.10	1회	0.10		
7.⑧.기술자격		0.30	1회	0.30	0.30	
		0.10	1회	0.10		

부칙(2023.7.10. 인사위-202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학년도 시행안 예고)** 이 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6조(경력가산점) ⑥의2.**

5. 거제, 양산 지역의 농어촌 지역 학교 일부를 해지하여 도심지역 학교로 전환한다.<시행일: 2026.3.1.>

거제(6개교): 거제상문고, 거제중앙고, 고현중, 거제중앙중, 계룡중, 신현중

양산(7개교): 물금고, 범어고, 증산고, 신주중, 물금중, 양산중앙중, 금오중

부칙(2024.7.8. 인사위-2024-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